



뉴저지주 사법부
변호사 윤리청 (Office of Attorney Ethics)
변호사를 고발하는 방법

변호사 윤리청(Office of Attorney Ethics, OAE)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njcourts.gov 로 가서 "변호사 윤리(attorney ethics)"를 검색하십시오.

변호사는 법을 준수하고 뉴저지주 대법원(New Jersey Supreme Court)이 채택한 변호사의 행동
규범(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변호사는 경고부터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다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청은 주 대법원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복잡한 불만 사항을 조사합니다.
일반적인 불만 사항은 주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구역 윤리 위원회(District Ethics Committees)의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조사합니다.

변호사 징계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징계를 정당화하려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솔직한 의견 차이는, 사건 처리의 결과가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도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나
판단 착오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도나 성격은 윤리 위반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처리 방식에 관한 의견 불일치, 또는
변호사 비용의 청구서만으로는 변호사 행동 규범을 위반했다고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통의 부재나 오해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항상
변호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입증될 경우, 변호사 징계를 야기할 수 있는 몇몇 예시입니다:

-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자금을 귀하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 또는 거절하거나, 또는 요청 시 해당 자금에 대한 완전한 회계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귀하의 사건에 관한 문의에 전혀 응답하지 않거나, 법원 출두 날짜를 알려 주지 않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제가 단순히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것이라면, 먼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 변호사가 사건 처리 중 거짓말을 하거나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조종한
경우. 법조계의 근간은 진실과 정직입니다.

수임료 중재

수임료 분쟁은 언제나 비윤리적 행동과 연관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변호사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의 대안으로, 뉴저지주 대법원은 의뢰인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요청할 경우
수임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임료 중재 위원회를 17개 구역에 만들었습니다.

법원 규정에 따라, 수임료 중재를 신청하려면 윤리 위원회에 고발하기 전에 반드시 수임료 중재 위원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락할 때 수임료 계산 방식이나 청구 방식에 관해 서면으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와 변호사는 첫 상담 중에 수임료에 관한 모든 질문을 논의하여 양측 모두가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사건 처리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수임료 중재 위원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njcourts.gov/attorney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

변호사 징계는 위반의 상황과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의 징계가 있습니다: 경고, 견책, 불신임, 정직 또는 변호사 자격 박탈.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고발에는 불만 사항 제기, 조사, 심리 그리고 검토의 네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단계에 대한 일부 정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njcourts.gov/attorney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세자가 아닌 변호사가 납부하는 연회비로 충당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운영되는 윤리 및 수임료 중재 위원회의 구성원은 자원봉사 변호사와 일반인입니다.

불만 사항 제기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변호사의 주 법률 사무소가 위치한 구역의 윤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불만 제기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증인의 이름과 주소, 날짜, 추가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중요한 사실과 중요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만 제기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조사

위원회 간사가 양식을 검토하여 불만 사항의 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만 사항이 조사 대상일 경우, 간사는 사건을 접수하고 변호사 회원에게 사건을 배정하여 조사하도록 합니다. 조사는 기밀로 진행됩니다. 귀하와 문제의 변호사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원 규정에 따라, 일반 조사는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복잡한 조사는 접수 후 9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윤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서가 제출되며, 위원장이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에게 사건을 기각하고 귀하에게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지시합니다. 기각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징계 검토 위원회(Disciplinary Review Board)에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위법 행위가 법원 규칙이 정의하는 경미한 비윤리적 행동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사가 증거로 뒷받침되는 모든 위법 행위를 시인할 경우, 위원장은 변호사 윤리청장(OAE Director)에게 해당 사건이 전환 처분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처분이란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전환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대한 합의에 의한 비징계 처분 방식입니다. 전환 처분을 받으려면 해당 변호사가 비윤리적 행동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위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사 윤리청장이 전환

처분을 승인해야 하며, 이는 해당 변호사가 공개적인 징계를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전환 처분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청장의 결정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심리

위원장이 정식 징계 고발장을 발행하고,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세 명의 자원봉사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 앞에서 심리가 열립니다: 패널 중 두 명은 변호사이고 한 명은 일반 시민입니다. 심리 패널의 위원들은 모두 뉴저지주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구역 윤리 위원회에서 활동합니다. 징계 심리 절차는 법정 재판 절차와 유사합니다. 절차는 기록되며, 증언은 선서 하에 이루어집니다. 증인의 출석과 기록물의 제출이 소환장에 의해 강제성을 띌 수 있습니다. 심리는 일반인 출입을 허용합니다.

심리가 끝난 다음, 패널은 심의를 거친 후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발장을 기각합니다.
- 변호사가 고발장에 기재된 위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저질렀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패널은 해당 변호사에게 부과할 징계의 수준을 권고합니다. 징계 권고안은 정립된 규칙과 이러한 유형의 이전 사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권고안은 검토의 다음 단계를 위해 징계 검토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변호사 윤리청(Office of Attorney Ethics, OAE)

OAE는 주 대법원을 대신하여 복잡한 고발 사항을 조사하고 기소합니다. OAE는 주 전역의 18개 구역 윤리 위원회와 17개 구역 수임료 중재 위원회를 돕고 지원합니다.

OAE 또는 어떠한 구역 윤리 위원회도 고발하는 사람을 변호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징계 절차를 통해 배상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래 변호사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에 관한 민사 소송 제기를 논의해야 합니다.

징계 검토 위원회(Disciplinary Review Board, DRB)

DRB는 뉴저지주 변호사 징계 제도의 중간 항소심 역할을 합니다. DRB는 구역 윤리 위원회, 특별 윤리 심판관, 그리고 변호사 윤리청이 제기한 모든 징계 권고안을 검토합니다.

DRB는 검토한 사안에 대해 서면 결정서를 발행하고, 이 결정서는 뉴저지주 대법원으로 보내져 최종 검토를 거칩니다.

윤리적 불만 제기 기각에 대한 항소 그리고 수임료 중재 위원회 판결에 대한 항소에 내려진 DRB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대법원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njcourts.gov/attorneys/drb.html을 방문하거나, 609-815-2920으로 전화하거나, 징계 검토 위원회 (주소: Disciplinary Review Board, P.O. Box 962, Trenton, NJ 08625)로 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대법원 검토

모든 징계 사안은 뉴저지주 대법원의 검토와 징계 명령 제출 후에 최종 확정됩니다. 주 대법원은 DRB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위반 및 징계에 관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위반 및 징계에 관한 주 대법원 명령(Order by the Supreme Court)이 내려짐으로써 최종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거나 또는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하는 최종 명령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변호사 기금

뉴저지주 의뢰인 보호 변호사 기금(New Jersey Lawyers' Fund for Client Protection)은 변호사가 자금을 훔치는 그런 드문 경우에서 의뢰인에게 해당 자금을 환급합니다. 이 기금은 7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7인 팀은 변호사 5명 그리고 뉴저지주 대법원이 임명한 비변호사 2명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정당한 청구인이 되려면, 변호사/의뢰인 관계 또는 변호사와의 신탁 관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변호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신탁계정의 돈을 수금하여 탈취했음을 의미하는 "보상가능한 손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njcourts.gov/attorneys/cpf.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njcourts.gov/attorneys/drb.html을 방문하거나, 609-815-2920으로 전화하거나, 징계 검토 위원회(주소: Disciplinary Review Board P.O. Box 962, Trenton, NJ 08625)로 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주 변호사 지원 프로그램 (New Jersey Lawyers Assistance Program, NJLAP)

NJLAP는 뉴저지주의 모든 변호사, 판사, 법대 학생 및 법대 졸업생이 개인적, 직업적 웰빙을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무료 기밀 자원입니다. NJLAP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1-800-246-5527로 전화하거나, info@njlap.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www.njlap.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귀하의 변호사가 비윤리적 행동에 관여했다고 생각할 경우, 윤리 및 수임료 중재 양식 핫라인 (Hotline for Ethics and Fee Arbitration Forms)으로 문의하십시오 (www.njcourts.gov/attorneys/oae.html 또는 전화 1-800-406-8594).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구역의 윤리 위원회 간사에게 연결되어 변호사 불만 제기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또한 www.njcourts.gov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스튜어트 래브너
수석 판사
Stuart Rabner
Chief Justice

조안나 바르바 존스
변호사 윤리청장
Joanna Barba Jones
Director, Office of Attorney Ethics
CN 12643 - 2024년 3월